

「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방식의 개선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고, 관련 서식 등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“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”로 변경(제명)
- 고문변호사 위촉을 “의회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” 를 “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”로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“고흥군의회의를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”을 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”으로 개정(안 제3조제2항)
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“1년”에서 “2년”으로 개정하고, 재위촉 근거 신설(안 제4조제1항)
- 고문변호사의 해촉을 “본회의 의결로”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조항 신설(안 제5조)
-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3. ~ 2023. 2. 8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.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”를 “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“의회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 1인”을 “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(고문사항)”을 “(직무)”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흥군의회 의장을”을 “의회를”로, “수임할 수 없다..”를 “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.”로 한다.

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를 제8조로 하고, 본문 중 “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

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3호서식에 의한 고문변호사 자문처리 실적부에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
4.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5.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6.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「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위촉) <u>의회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제3조(고문사항) <u>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<p>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<u>고흥군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4조(위촉기간) <u>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위촉) <u>①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---</u></p> <p>-----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</u></p> <p>제3조(직무) <u>①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의회</u></p> <p>----- <u>를</u></p> <p>----- <u>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제4조(위촉기간) <u>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내라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5조(해촉)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</u> <u>2.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u> <u>3.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</u> <u>4.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</u> <u>5.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</u> <p><u>제6조(회의)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,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실적부 비치) ----- ----- ----- 제3호서식에 의한 고문 변호사 자문처리 실적부에 관리하여야 한다.</p>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